검 토 보 고 서

연번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의 안 명	쪽
1	474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8
2	475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6

2026. 9. .

자치경제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정홍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74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심의안건의 사전 배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기존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은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그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현행 시행령에서는 자치구가 실시하는 자체 투자심사의 대상과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투자심사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5년 개정으로 자치구의 자체 투자심사 대상 기준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투자심사 업무에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성 사업 및 공모사업 등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됨. 현행 기

준상 자치구의 행사성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모사업 등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이 주요 평가대상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로 활용하는 것은 법률상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있음

○ 특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 구성과 민간위원 비율 등에 관한 법적 요건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위원회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안 제2조 및 제3조의 정합성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나,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제1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요건을 갖춘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4. 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회의 소집, 의결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는 구조라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건 사전 배부, 심사자료, 회의록 등 별도의 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5. 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서도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 필요성이 있다면 서면심사 근거를 조례 또는 관련 규정에 둘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6. 부칙에 대한 검토

○ 현재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에서는 기존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부칙에 폐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라고 규정할 수 있음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됨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로 활용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검단구청장 】
의안번호 475

Ⅰ. 제안 경위

○ 의 안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검단구청장

○ 제출일자: 2026년 9월 3일

○ 회부일자: 2026년 9월 3일

Ⅱ. 제안 이유

○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5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위원 정원을 현실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위원의 실질적인 심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 주민참여예산 교육과정 사전 이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주민·사회·직능단체·기관·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의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회의의 간사 역시 담당팀장으로 규정하여 행정적 책임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결정’에서 ‘논의’로 변경하고, 민관협의회의 기능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 기능으로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원을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8조 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요건 중 주민참여예산 교육과정 사전 이수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 제3항 제1호)

○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대상에 주민・사회・직능단체・기관・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 제3항 제2호)

○ 기존 제8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함

○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안 제9조 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협의회 간사를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 제2항, 안 제16조 제3항)

○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간사를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팀장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4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결정’에서 ‘논의’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 민관협의회의 회의 개최 목적을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안 제18조 제1항)

Ⅳ. 검토 의견

1.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민관협의회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이 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사전 교육 이수를 조례상 위촉요건으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민참여의 실질성과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예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의 ‘결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내부의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선정·우선순위 등에 관한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임

2.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규모 및 위촉요건을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을 조정하는 한편,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구의 운영방법과 기능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특히 실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재 5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 정원을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됨에 따라 실제 검단구 현황에 맞게 운영 규모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검토

○ 안 제8조 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원을 현행 10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제 5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은 기존 위원의 수를 감축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조례상 정원과 검단구 현황에 맞게 실제 운영 규모를 일치시키는 정비적 성격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5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자치입법의 범위 내에 있음

○ 안 제8조 제3항 제1호

-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중요한 운영·평가 요소로 보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전에 특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사전교육을 위촉의 필수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사전교육 이수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참여 장벽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함. 다만 사전교육 요건을 삭제할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도의 취지와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위촉 후 기본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제3항

- 개정안은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규정만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지역회의가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당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 주민 등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역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사업공모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려는 취지에 부합함. 따라서 해당 개정은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규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원을 실제 운영 규모인 50명에 맞추고, 사전교육 이수요건을 삭제하여 참여장벽을 완화하며, 추천대상을 확대하는 사

항은 주민참여의 폭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또한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 역시 행정적 책임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 제13조제3항의 개정은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 주민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의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